

서울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19나20025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레

담당변호사 김태균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노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1. 12. 22.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가합5052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17. 9. 11.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7. 9. 2. 접수 제42894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1).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2017. 9. 11.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초과상태 여부

1) 적극재산의 산정2)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C이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10. 10. 기준 당진시 E 대 215㎡ 및 그 지상 건물의 시가는 564,320,600원, 2017. 11. 1. 기준 당진시 F 대 197㎡, G 대 401㎡의 시가는 60,398,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2017. 9. 11.경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624,718,600원으로 추인된다.

2) 소극재산의 산정3)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06,837,64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채권자	항목	채무액(원)	증거
1	피고	대여금	218,752,876	을 제1호증
2	원고	대여금	192,835,068	갑 제1호증
3	H	-	30,000,000	갑 제2호증의 4
4	J	임대차보증금	50,000,000	갑 제5호증
5	K	임대차보증금	40,000,000	갑 제5호증
6	대한민국	채납세금	12,249,700	갑 제5호증
7	O	임대차보증금	43,000,000	갑 제9호증
8	P	임대차보증금	20,000,000	갑 제13호증
합계			606,837,644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면 소극재산을 넘는 적극재산이 존재하였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처분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근소한 차이로 초과하더라도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0708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숙연, 판사 양시훈, 판사 정현경

별지

부동산 목록

1. 당진시 E 대 215m^2
2. 당진시 F 대 197m^2
3. 당진시 G 대 401m^2
4. 당진시 E, F, G 지상 L건물 [도로명주소] 당진시 M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구조지붕 지상 4층 단독주택(다가구-6) 및 제2종 근린

생활시설

1층 141.84m^2

2층 141.84m^2

3층 141.84m^2

4층 141.84m^2 . 끝.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7. 9. N에게 매각되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합51180)를 제기한 상태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청구취지에서 삭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2021. 8. 3.자 준비서면)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① C이 2020. 5. 6. I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731)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합의금으로 170,000,000원을 지급받고, ② C이 강제집행면탈에 공모한 D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20가단17411)에서 2021. 1. 19. 5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천지방법원 2020머103730)이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위 170,000,000원 및 50,000,000원의 채권도 C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위 각 채권의 성립시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위 부동산의 시가만으로도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제1심에서 I에 대한 121,748,900원의 정산금 채무를 주장하였으나, I의 C에 대한 정산금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8나2054096)에서 위 정산금 채권이 2017. 7.경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자 이 법원에 이르러 주장을 철회하였다.